

의안번호	2211741
의 퇴 인	문대림의원
회 답 일	2025.8.29.
추계번호	25D400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의2 (예비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신설	시·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구의 읍·면·동 중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0조의2 (예비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구의 읍·면·동 중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1)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1. (생략)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 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현재 89개 시·군·구가 지정되어 있음

[참고자료] 인구감소지역 현황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²⁾

-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각 회계연도당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1조원의 기금은 시·도에 2,500억원, 시·군·구에 7,500억원이 배분되며 시·군·구에 배분되는 7,500억원은 인구감소지역 89개에 95%가, 관심지역 18개에 5%가 다시 배분됨

- 다만,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예비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 대상, 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④ (생략)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5조(기초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제3조제2호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한다.

2. 제3조제2호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심지역에 배분한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

[참고자료] 인구감소지역 현황(「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관심지역 18개)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도 포천시